

전자신고는 관할세무서장외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다.

### ⑤ 접수증의 교부(법제85조의4)

접수증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가능하다.

## 2. 도입취지

과세표준신고서나 과세자료등의 서류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 제31조에 의한 전자적민원처리의 한 예이다.<sup>2)</sup>

## 3. 국세기본법의 지방세법에의 준용

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.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전자우편신고제도를 지방세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

람직하다고 본다.

## V. 지방세정의 전산화 관련 인프라구축

지방세정의 전산화촉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담당자 및 납세자들의 정보화마인드 제고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제반 환경적인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.

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.<sup>2)</sup>

첫째, 공공기관에서 사용자들은 대부분 Word Processing 수준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, 기타 다른 분야에는 사용수준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. 중요한 것은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, E-Mail, 정보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. 이러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H/W의 구축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관련한 지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. 따라서 행정전산화에 관한 정책은 사용자들을 위한 실

2) 「정보화정책평가 :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전산화에 대한 네트워크분석」, 정책분석평가학회 보 VOL6, NO1(96.12)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